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6. 12. 6

나. 회부일자 : '96. 12. 7

3. 제안이유

시·도에 설치하는 실·국 상한수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우리 도에도 1개 국 신설이 가능하고, 정원도 승인되어 업무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화관광분야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문화관광국을 신설하여 다음 분장사무를 명시

- 문화예술의 육성
- 문화재 보존관리
- 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련업무
-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조정
- 관광지도 및 관광지 개발업무

- 문화관광국 신설에 따라 현재의 내무국 및 공업경제국 분장사무 중 중복이 되는 다음 업무를 삭제
  - 내무국 -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 청소년 관련 업무
  - 공업경제국 - 관광의 진흥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욕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실·국·본부 설치 범위인 11실·국·본부이내로 기존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흡수해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장사무로는

1. 문화예술의 육성
2. 문화재 보존관리
3. 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련업무
4.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조정
5. 관광지도 및 관광지 개발업무등

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